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u>발급시스템</u> 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	3. ----- ----- ----- <u>발급시스템</u> <u>또는 부호관리시스템</u> -----.	○ 신청인이 직접 세관을 방문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자는 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 7. (생략)

<신설>

8. (생략)

제5조(신청의 종류) 이 고시에 따른 신청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변경 신청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7. (생략)

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5. ~ 7. (생략)

8.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5조(신청의 종류) -----
-----.

1. ~ 4. (현행과 같음)

5. ----- 정보변경 --

6.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갱신 신청

7.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재발급 신청

8.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해제) 신청

9.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해지 신청

10.·11.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 고시 제명 변경 반영

○ 관련 고시 추가

○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정보 변경·재발급·사용정지 명확화, 갱신·해지 신설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

제5조제1호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2. (생략)

3.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4. (생략)

② (생략)

제6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려는 경우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로 같음할 수 있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법인의 설립등기에 시일이 소요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업자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법인등기부등본 같음서류 규정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 사항 안내(법인심사과-1123, '20.6.26.) 고시 반영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2. (생략)

② 제5조제5호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변경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관련서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내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

나.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또는 기간만료 6개월 전의 여권

2.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사용정지 및 해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제5조제5호에 따른 정보변경 :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정보를 변경

○ 본인 식별 신분증 명확화

○ 개인 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재발급·갱신·사용정지·해지 신청사항 규정 명확화

제9조(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① 제5조 제6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 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1. ~ 2. (생략)

2. 제5조제6호에 따른 갱신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기존 부호를 재사용(단, 갱신의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3. 제5조제7호에 따른 재발급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변경

4. 제5조제8호에 따른 사용정지(해제)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일시적으로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 해제

5. 제5조제9호에 따른 해지 :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정보를 삭제

제9조(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 ① 제5조 제10호-----

-----.

1. ~ 2 (현행과 같음)

○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3.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제4조제2항에 따라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5조제7호에 따라 해외거래처부호를 변경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변경내역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부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첨부서류의 제출) ①·② (생략)

③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세관을 방문하여 제8조제1항의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에 동

3. -----
-----하
며,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1호-----

-----.

제10조(첨부서류의 제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 관세사의 해외거래처부호 신규 및 변경 신청 절차 간소화로 신속통관 지원

○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

○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에는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가 없어 개인정보 열람 동의 삭제

의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제6조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발급, 변경 또는 지위승계의 신청)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 3. (생략)
4. 법원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내역과 일치 여부(법인사업자에 한정한다)

5. ~ 9. (생략)
- ② ~ ④ (생략)

제12조(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한정하며, 법인의 설립 등기 전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신규신청한 경우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 확인)

5. ~ 9.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법인의 설립등기 전 법인 등기부등본을 갈음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법인등기부의 사후확인 절차 규정
- ※ 사업자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 사항 안내(법인심사과-1123, '20.6.26.) 고시 반영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제8조에 따라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신청(신규, 변경)을 받은 부호관리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호를 부여한다.

1.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e-mail) 주소를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등록된 부호를 그대로 사용하되 등록사항을 수정한다.

2.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부여하고 종전의 부호는 사용을 정지한다.

제13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등록) ① - ----- 발급(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정보변경, 갱신, 재발급 또는 해지 신청의 경우 부호관리는 ----- 따른다.

1. 정보변경 또는 갱신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사용

2. 재발급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는 해지 하고, 새로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사항에 따른 부호 사용관리 기준, 발급횟수 제한 등 처리 방법 규정

<신 설>

<신 설>

제16조(부호의 관리) ① ~ ③ (생략)

<신 설>

3. 해지한 경우 : 종전에 발급된 부호 삭제

④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후 신규발급 횟수는 합산하여 연간 총 5회로 한다. 다만, 명의도용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 횟수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부호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신규로 발급받은 경우 : 신규 발급 일로부터 1년

2. 정보를 변경한 경우 : 변경 승인일로부터 1년

3. 갱신한 경우 : 기존 유효기간 만료

○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미갱신시 처리사항 신설

<신 설>

제25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부호관리자는 사용자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나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부호를 사용정지하거나 사용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일로부터 1년

4. 재발급한 경우 : 재발급일로부터 1년

5. 사용정지한 경우 :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⑤ 부호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동 사실을 알리고 갱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 30일이 경과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해지할 수 있다.

제25조(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정지 등) ① ----- 인터넷 -----

발급시스템 또는 별지 제4호서식-----

-----.

○ 제8조와 규정문구 동일,
개인 통관고유부호 직권
사용정지 신설

<신 설>

② 부호관리자는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사용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사용을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신 설>

③ 부호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부호의 사용을 정지한 경우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발급자에게 사용정지 사실과 재발급 절차를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알릴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직권 사용정지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제3호의 재발급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제30조(재검토기한) -----

○ 고시의 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 시점 조정

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 2025년 7월 1일 -----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제16조에 따른 부호의 관리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관세청고시 제2025-32호(2025. 6.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6조, 제25조의 개정 사항 및 별지 제4호의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제8

- 고시 개정 시행일 규정
- 시스템 개선에 따른 시행 시기 조정

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2027년에 도래하는 발급자의 생일 전에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여권으로 발급받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별표 1]

2. 기재 방법

① 상호

한글로 표시된(영문인 경우 한글로 읽어서 기재) 상호의 앞 4자를 사용한다. 단,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업체 유형을 제외한 상호가 4자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공간을 한글 1자당 "**"으로 채운다.

예) (주)미도과 => 미도과**

[별지 제2호서식]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체계 설명 보완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 신청서의 변경사항에 영구적인 사용중지를 의미하는 '미사용' 항목 추가

※ 현행 부호신청시스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변경신청 항목과 일치

[별표 1]

2. 기재 방법

① 상호

한글로 표시된(영문인 경우 한글로 읽어서 기재) 상호의 앞 4자를 사용한다. 단, '주식회사', '(주)',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의 업체 유형을 제외한 상호가 4자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공간을 "*"으로 채운다.

예) (주)미도과 => 미도과**

[별지 제2호서식]

- ① 성명 : 본인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다. 단, 외국인은 여권에 기재된 영문으로 기재한다.
- ②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처음에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한다.
 - 예) 국가가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345678인 경우 ⇒ US12345678
- ③ 주소 : 주민등록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를 기재하며, 해당 주소지의 우편번호를 함께 기재한다.
- ④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 ⑤ 이메일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 ⑥ 휴대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⑦ 휴대전화 명의구분 : 휴대전화 명의를 "본인" 인지 여부를 체크
- ⑧ 변경사항
 - 사 용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규신청 시 사용항목에 체크
 - 사용정지 :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 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
 - 재 발 급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체크(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한다.)
 - 정보변경 :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유지하면서 등록 내용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
- ⑨ 변경할 정보 : 부호(변경) 신청 시 등록된 정보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할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정보변경 :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유지하면서 발급정보 변경 또는 사용정지 하는 경우 체크
- 갱 신 : 기존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유지하면서 부호 유효기간 갱신시 체크
- 재 발 급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재발급은 연간 5회로 제한한다.)
- 사용정지(해제)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체크
- 해 지 : 개인 통관고유부호 영구적 사용정지 시 체크
- ② 성명 : 본인의 이름을 한글과 영문으로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한글은 생략할 수 있다.
- ③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 처음에 ISO국가코드 2자리와 여권번호를 이어서 기재한다.
 - 예) 국가가 미국이고, 여권번호가 12345678인 경우 ⇒ US12345678
- ④ 국적 : 국가명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한다.
- ⑤ 여권 만료일 : 신분증을 여권으로 제시하는 경우 여권의 만료일을 기재한다.
- ⑥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반드시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한다.
- ⑦ 휴대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 ⑧ 생년월일 : 연월일 순으로 기재한다.
- ⑨ 이메일주소 :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 ⑩ 변경할 정보 : 부호 발급 정보 변경 신청 시 등록된 정보 중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할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⑪ 주소 :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 목록을 입력하며, 반드시 우편번호와 함께 기재한다.(주소지는 20군데로 제한한다.)
- ① Application category
 - New: When applying for new issuance of a personal customs clearance code (PCCC)
 - Change Information: When applying for a change of information or deactivating the PCCC without changing the existing PCCC
 - Renew: When applying for renewal of the expiration date without changing the existing PCCC
 - Reissue: When applying for re-issuance of the PCCC (Re-issuance is limited to 5 times a year.)

- Deactivate/Activate: When applying for deactivate/activated the PCCC
- Cancel: When applying for canceling the PCCC
- ② Name: The name of the applicant must be identical with the names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indicated in the passport. However, foreigners are not required to provide their names in the Korean language.
- ③ Resident Registration No.: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the applicant
 - Foreigners are required to enter the alien registration number issued by Immigration Office in this field. If the alien registration number is not available, please enter the two letters in the English alphabet of the ISO country code and the passport number.
e.g. In case of U.S citizen with the passport number of 12345678 ⇒ US12345678
- ④ Nationality: The country name either in the Korean or English languages
- ⑤ Passport Expiration Date: When the passport is presented as a form of identification
- ⑥ Telephone No.: Reachable contact number with the area code for communication
- ⑦ Mobile Phone No.: Reachable mobile phone number for communication
- ⑧ Date of Birth: The date of birth indicated in the order of the year, month, and day
- ⑨ Email Address: The applicant's email address
- ⑩ Information to Change: When applying for a change of information for the PCCC issuance, please indicate the specific information items to change in the registered information.
- ⑪ Address: A list of addresses for delivery with the zip code (It is limited up to 20 addresses.)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위임장 제출 생략 사유 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반영

<신 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지등록번호		④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거래 상대방	⑤ 업체명(영문) (Name) (예시) GRASS VALLEY GROUP (Code) (예시) CO		
	⑥ 국가명(영문) (ISO Code) (예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기본정보 변경사항	항목명	변경 전	변경 후
	⑦ 대표자명(영문)		
	주소		
	⑧ 행정구역		
	⑨ 도시		
기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⑩ 변경 사유			
⑪ 변경사유 발생일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내역 증빙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기 타 >

⑰ 신청인 :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 신청자가 작성한다.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 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사업지등록번호		④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신청인 구분 환주 / 관세사
	⑦ 관세사 부호		⑧ 관세사명
거래 상대방	⑨ 업체명(영문) (Name) (예시) GRASS VALLEY GROUP (Code) (예시) CO		
	⑩ 국가명(영문) (ISO Code) (예시)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S)		
기본정보 변경사항	항목명	변경 전	변경 후
	⑪ 대표자명(영문)		
	주소		
	⑫ 행정구역		
	⑬ 도시		
기타 변경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⑭ 변경 사유			
⑮ 변경사유 발생일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해외거래처부호 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⑯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 관 장 귀 하			
첨부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내역 증빙서류 2. 위임장(제4조제2항의 경우에 한하며,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사가 관세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9호서식 이용)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제9조제1항제3호 개정(위임장 제출 생략 사유 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반영

[별지 제6호 뒤 쪽]

< 신청인 정보 >

① 업체명 : 신청인의 상호를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②~④ (생략)

<신 설>

< 거래상대방 >

⑤~⑥ (생략)

< 기본정보 변경사항 >

⑦~⑧ (번호이동)

< 기타 변경사항 >

⑨~⑩ (번호이동)

<신 설>

[별지 제6호 뒤 쪽]

< 신청인 정보 >

① 업체명 : 신청인(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자)의 상호를 한글 상호로 기재한다.

②~④ (현행유지)

⑤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기부등본의 등록번호(13자리)를 기재한다.

⑥ 신청인 구분 : 화주, 관세사 (택 1)

⑦ 관세사 번호 : 신청인 구분이 관세사인 경우, 무역통계부호의 신고자(관세사) 부호를 기재한다.

⑧ 관세사명 : 신청인 구분이 관세사인 경우, 무역통계부호의 신고자(관세사) 상호를 기재한다.

< 거래상대방 >

⑨~⑫ (번호이동)

< 기본정보 변경사항 >

⑪~⑫ (번호이동)

< 기타 변경사항 >

⑬~⑭ (번호이동)

< 기타 >

⑮ 신청인 : 수출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신청자가 기재한다.

○ 해외거래처부호 변경 신청서
서식 항목 변경내역 반영

